##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

( 제정) 2022.12.29 조례 제2640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함양 군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원대상) ① 함양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한다. 다만,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.
  - 1. 지급기준일에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에 따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
  - 2. 65세 이상인 사람
  -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차상위 계층인 사람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1.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
  - 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

- 제3조(지원대상자 결정 등) ① 군수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정전 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야 한다.
  - ③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전산시스템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4조(카드발급)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게 이미용 바우처 카드(이하 "카드"라 한다)를 발급한다.
  -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다.
  - 1. 분기별로 카드를 지원한다.
  - 2.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일괄 발급한다.
 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.
    - 가. 함양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한 경우
    - 나.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이 도래한 경우
  - 4.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5. 읍면장이 지원대상자(그 대리인을 포함한다)에게 카드를 배부한다.
  - ③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

리대장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- 제5조(카드사용) ① 제4조에 따른 카드는 함양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이미용 업소로써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서만 사용할 수 있다.
  - ② 누구든지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증여 등을 할 수 없다.
  - ③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은 소멸한다.
- 제6조(협약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미 용 바우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1.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
  - 2.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업체
  -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사업비의 정산 등)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, 잔액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.
  -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분기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.
- 제8조(사용중지 등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. 이 경우 이미 사용한 이미용바우처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미용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
- 2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 바우처를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제9조(위탁운영) 군수는 이미용 바우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도·감독)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소나 수탁기관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제정 2022. 12. 29. 조례 제2640호>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